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 - 75
----------	---------

제출연월일 : 2010.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과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출산축하금” 이라고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나. 지급대상자의 범위 (안 제3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로 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 보호자로 함을 규정

다. 지급기준 (안 제4조)

예산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원을 지급함을 규정

라. 지급신청 (안 제5조)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안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하고 거주지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함)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

고서 접수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서식의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

마. 지급절차 (안 제6조)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규정

3.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가정복지과-32338(2010.10.15)호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안 반영

6. 기타사항

가. 관계근거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3)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10.21. ~ 11.10.(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0.11.16)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3조제2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 등 입증서류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출산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를,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